

『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가. 당초 : 「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」
 - 나. 변경 : 「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-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 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6조)
 - 가.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, 결산 규정 및 회계관직 등 정비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)
- 기금 사무에 관한 위탁 조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,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며, 위원회 비율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,
- 기금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, 위원회 구성 비율을 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